



[발췌번역문]

AB SICAV I

변동자본투자회사(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등록사무소: 2-4, Rue Eugène Ruppert, L-2453 Luxembourg
R.C.S. Luxembourg B 117.021

통합 정관

2016년 2월 5일

상 호

제1조

“AB SICAV I”(이하 “회사”)라는 명칭하에 회사는 주식청약인들 및 이후로 주식을 취득하는 주주들 간에 변동자본투자회사(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의 자격을 가진 주식회사(Société anonyme)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존속기간

제2조

회사의 존속기간은 무한하다.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정관 개정시 요구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채택된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다.

목 적

제3조

회사의 유일한 목적은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주주에게 회사의 자산 운용 수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여하한 종류의 양도성 유가증권, 및 허용되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회사는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에 관한 2010년 12월 17일자 법률(“2010년 법”) 제1부에 의거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회사의 목적을 완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절차를 취하고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회사는 양도성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UCITS”)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

등록사무소

제4조

회사의 등록사무소는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룩셈부르크시에 두며, 회사 이사회(통칭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들” 및 개별적으로 “이사”라고 칭함)의 결의에 의하여 룩셈부르크 국내 및 해외에 완전 소유 자회사, 지점 및 기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룩셈부르크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등록사무소를 룩셈부르크 대공국 내의 기타 시 당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등록사무소에서의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또는 등록사무소와 해외주채원과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비정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 또는 군사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임박하다고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 그 등록사무소는 일시적으로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비록 회사의 등록사무소의 일시적인 이전이긴 하지만 그러한 일시적인 조치는 여전히 룩셈부르크 법인으로 남아 있는 회사의 국적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회사의 자본금

제5조

회사의 자본금은 무액면 주식으로 구성되며 본 정관의 제23조에 따라 결정되는 바에 따라 언제나 회사의 순자산총액(경우에 따라, 회사의 주식 클래스가 보유하는 회사 주식의 가치를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출자된 자본은 회사의 인가 이후 6개월 내에 1,250,000 유로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르러야 한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유보하지 않고 본 정관의 제24조에 따라 언제라도 전액납입주식을 어떠한 제한 없이 발행하도록 수권되었다.

(번역 중략)

주주총회

제9조

회사의 적법하게 개최된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전체를 대표하며 이의 의결사항은 그 보유 주식의 클래스와 상관없이 회사의 모든 주주를 구속하며, 주주총회는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지시, 수행 및 인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제10조

정기주주총회는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룩셈부르크 내 회사의 등록사무소 또는 회의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룩셈부르크 내 다른 장소에서 매년 10월 마지막 목요일 룩셈부르크 시간 오전 9:30에 개최되며, 해당 일자가 룩셈부르크에서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개최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경우 이사회의 절대적이며 최종적인 판단으로 정기주주총회를 해외에서 개최할 수도 있다.

특셈부르크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는 전술한 문단에서 기재된 일자, 시간 또는 장소 이외의 이사회가 정하는 일자, 시간 또는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기타 주주총회 또는 클래스총회는 각 회의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장소와 일시에 개최될 수 있다. 클래스총회는 오로지 해당 클래스 관련 사항에 대한 결의를 위해서만 개최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클래스들의 주주들의 승인을 요구하는 제의에 의해 관련 클래스들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 이들 다수의 클래스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취급할 수 있다.

제11조

이 정관에서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 및 통지 기간은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된다.

클래스의 종류 및 여하한 클래스의 기준가격에 상관없이 각각의 주식은 본 조항들에 의한 해당 제한사항들을 조건으로 한 번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번역 중략)

법률상 요구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하게 소집된 펀드 주주총회 혹은 클래스총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 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권하였거나 백지투표 또는 무효표를 투표한 주주들에 대한 주식과 관련한 의결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주가 법인인 경우 동 주주는 적법하게 수권된 그의 임원의 자필서명으로 대리 위임장을 체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주주들이 완전히 이행하여야 하는 기타 모든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

제13조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된다. 이사는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다.

이사들은 주주들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임되며 차기 주주총회에서 승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재직한다. 다만,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 없이 해임 및 대체될 수 있다.

재직 중인 이사가 사망, 해임 또는 그 외의 사유로 공석인 경우 나머지 이사들은 다수결로 다음 주주총회 때까지 공석을 메울 이사를 선임한다.

제14조

이사회는 이사회의 이사 중에서 1인을 의장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을 부의장으로 선정한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에 책임을 지는 비서역을 1인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회사의 이사일 필요는 없다.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내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의통지에 기재된 장소에서 2인의 이사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다. 의장이 모든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하나, 의장이 부재하는 경우 주주들 또는 이사회는 각각의 총회에서 의결권의 과반수 또는 참석한 이사들의 과반수 정한 자를 임시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번역 중략)

제16조

이사회는 위험분산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방침과 투자방침 및 회사의 경영과 사무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2010년 법 제1부에 따라 회사의 투자자산에 적용되는 투자제한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번역 중략)

이해관계의 상충

제17조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의 이사, 관계인이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회사와 그 상대방 회사와의 계약 및 거래는 그 이해관계 사실에 의하여 무효가 되거나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회사와 계약관계가 있거나 달리 거래를 맺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이사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나 임원은 그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를 이유로 당해 계약이나 기타 거래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지 아니한다.

회사의 여하한 이사 또는 임원이 회사의 거래에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이사나 임원은 그러한 사적인 이해관계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거래 및 그러한 이사 또는 임원의 이해관계는 차기 주주총회에서 보고된다. 이 문단의 내용은 이사회의 결정이 통상적인 조건에서 이행된 현행운영과 관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제17조에서 사용된 “사적인 이해관계”라는 용어는 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와 관련이 있거나 이사회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수시로 정한 여하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 여하한 사항, 입장 또는 거래에 대한 이해관계의 유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계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법인서명

제19조

회사는 2인 이상의 공동서명이나 이사회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한 사람의 개별 서명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26조

회사의 회계연도는 6월 1일에 시작되어 다음 해 5월 31일에 종료된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미화달러 또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정하는 기타 통화(들)로 작성된다. 본 정관의 제5조에서 명시되었듯이 다양한 클래스가 있으며 이러한 클래스 내에서 다양한 통화들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을 때, 해당 재무제표는 회사의 계정 산정의 목적상 미화달러로 환산되며 모두 합산된다.

제27조

클래스총회에서는 이사회에 제청이 있을 경우 룩셈부르크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의 수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수시로 배당을 선언하거나 이사회로 하여금 배당을 선언하도록 할 수 있다.

이사회는 룩셈부르크 법률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도록 수권된 모든 주식클래스(들)에게 중간배당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선언된 현금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관련 주식클래스의 표시통화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사회가 선택하는 기타 통화로 지급되며 이사회가 결정하는 장소 및 시간으로 지불된다.

이사회는 기명주식의 경우 현금 배당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선택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배당금을 주식클래스에 재투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금의 액수가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금액 및 회사의 판매문서에 기재된 금액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어떠한 배당금도 지급되지 아니하며 자동적으로 재투자된다.

제28조

회사는 회사의 자산 보관을 담당하는 보관회사를 선임한다. 보관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그의 대리인을 통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보관회사의 선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른다.

- (a) 보관회사는 이사회가 새로운 보관회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선임을 해지할 수 없으며,
- (b) 회사는 회사가 새로운 보관회사를 선임하거나 보관회사의 파산이 선언되었거나 보관회사가 채권자와의 조정애 들어갔거나, 지급 정지를 당하거나, 법원의 관리 하에 놓였거나 이와 유사한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되었거나 청산에 들어갔거나 회사가 보관회사의 선임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회사 자산의 손실이나 오용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선임을 해지할 수 없다.

제29조

청산은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자연인 또는 합법적인 단체들로 구성된) 1인 이상의 청산인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동 주주총회에서는 청산인의 권한 및 보수를 결정한다. 청산인들은 각 클래스의 주주들에게 각 주식클래스에 상응하는 순 청산대금(현금 또는 현물)을 주주들이 해당 클래스에서 보유하는 주식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제30조

본 정관은 룩셈부르크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족수와 과반수 요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기타 다른 클래스와 비교하여 어느 클래스 주식 주주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은 그러한 해당 클래스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전술한 정족수 및 과반수 요건에 따른 투표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제31조

본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사항은 수시로 개정된 바와 같은 상사회사에 관한 1915년 8월 10일자 법률 및 2010년 법(개정본 포함)에 따라 규정된다.

2016년 2월 5일자 통합 정관

2016년 2월 8일, Redange-sur-Attert에서 서명함

(서명필) (인감날인필)